

『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(안)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재안이유

-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현재의 구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운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·인적재난·기반재난으로 구분
 - 자연재난 : 태풍, 홍수, 호우, 폭풍, 해일, 폭설, 가뭄, 지진, 황사, 적조 등
 - 인적재난 : 화재, 폭발, 붕괴, 교통사고, 환경오염, 방사능사고 등
 - 기반재난 : 에너지, 정보·통신, 보건·의료, 원자력, 건설·환경, 식·용수 등
-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 체제와 단계별상황관리 체제 강화
 - 자연재난대책기간 강화 (제2조)
 - 여름철 : 매년 6. 15~10. 15 ⇒ 5. 15~10. 15
 - 겨울철 : 매년 12. 1~ 다음연도 3. 15까지
 - 인적재난대책기간 (제2조) : 재난발생에서 복구완료 시까지
 - 기반재난중점대응기간 (제3조) : 4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
 - 재난대비체제 강화 (제7조)
 - 자연·인적재난 : 3단계(준비→경계→비상)에서 2단계(준비→비상)로 축소
 - 기반재난 : 예방·대비·복구단계로 구분

-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·운영 (제4조 내지 제6조)
 - 운영기간 :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인적재난대책기간
 - 구 성
 - 본부장 : 시 장
 - 차 장 : 부시장
 - 총괄조정관 : 기획정보실장
 - 통제관 : 재난업무 담당국장(기반재난은 기반재난 담당부서 국·소장)
 - 담당관 : 재난관련 담당과장(기반재난은 기반재난 담당부서 과장)
 - 실무반 : 시 공무원 중 재난관련 담당공무원,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자(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)
-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운영 기준을 정함
 - 자연·인적재난은 상시대비체제 실무반과 사전대비 및 비상체제 실무반으로 구성(별표2)
 - 기반재난단계별로 실무반 구성 운영(별표5, 별표6, 별표7)
-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개선
 - 담당국·과장, 유관기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 개최,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 (제8조)
 - 대책본부에서 재난유형별, 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실무반별 매뉴얼 작성 (제21조)
-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상황관리 체계확립(제12조, 제13조)
 -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수습을 총괄지휘
 -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 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현장에 파견 현장상황관리 지원
- 자연·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의 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
 - 중앙대책본부 및 국가기반대책본부,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,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 및 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

구축 (제16조)

-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(제18조, 제19조)
 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이 가능한 인력과 특수장비 등을 파악 관리하여 지원 및 협조
- 재난발생 상황 보고시기·방법 등을 정함(제23조, 제25조)
- 기반재난에 대한 재난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단계의 상황관리를 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방안 마련
- 재난상황대처에 대한 민·관 협력체계 강화
 -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모니터 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 모니터링제 도입(제22조)
 - 재난관리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보전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마련(제32조)

4. 참고사항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

5. 검토의견

-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현재의 구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를 제정·운영하기 위함이며,
- 주요내용으로는
 -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·인적재난·기반재난으로 구분,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와 단계별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
 -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·운영 및 실무반 편성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,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개선·확립코자

함이며,

- 또한 재난상황대처에 대한 민·관협력체계 강화와 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의 구축으로 기반재난에 대한 재난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처코자 하는 내용으로,
- 지금까지 재해와 재난을 별도 관리함으로써 단계별 상황관리에 애로점이 있었으나 통합관리로 재난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-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